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08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장철민 · 백승아 · 황명선
허성무 · 채현일 · 김태년
이성윤 · 황운하 · 이용선
이재관 · 정일영 · 홍기원
김주영 · 염태영 · 안도걸
박 정 · 전현희 · 위성곤
손 솔 · 조승래 · 오기형
송기현 · 박상혁 · 문금주
김원이 · 박정현 · 신장식
한준호 · 박용갑 · 윤종균
김기표 · 손명수 · 정태호
복기왕 · 최혁진 · 어기구
남인순 · 김태선 · 박찬대
차규근 · 최민희 · 서왕진
한창민 · 서삼석 · 민병덕
강득구 · 김승원 · 장종태
권향엽 · 김한규 · 이소영
박지원 · 허 영 · 박희승
박홍근 의원(55인)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법은 정부로 하여금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위령사업, 진상조사사업 지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과거사연구재단은 설립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사 각 사건별로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내용으로 개별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건별로 위령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있는데, 과거사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은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0년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단일 위령시설 건립을 권고하였고, 2016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에 이를 건립하기로 하였음.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임. 희생자 대부분은 제주 4·3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대전형무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위령시설에는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한국전쟁기 다른 민간인 피해자도 안치될 예정임. 그러나 당초 2

020년 조성 예정이던 산내평화공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4년 완공 시점이 연기된 후,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2026년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지원하고 과거사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단은 산내평화공원 등 국가단위의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운영사업,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다.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15조).

마.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지원하고 과거사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사”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 경우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에서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의결한 사건에 한정한다.
 -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
 - 나. 과거사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되거나 이에 준하게 결정된 사건

다. 과거사로서 법원에서 배상 또는 보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

3.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란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

다.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4.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과거사치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 단위 위령시설이 소재한 대전광역시로 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등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및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개시결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3.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교류
4.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사업
5. 과거사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조 등) ① 국가기관 및 과거사 관련 연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과거사와 인권 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5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8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재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과거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과거사문제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과거사치유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